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3. 이수진의원 등 41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7.16.)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2.)
상정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요양기관이 간병인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업무관리자 지정 및 업무수행 기록, 근무형태 지정 및 서약서 작성 등 관리·감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고,

- 요양병원의 간병인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4. 4월~)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 고용한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